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가단31937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1. A

2. 주식회사 B

3. C

4. D

변론 종결2016. 12. 9.

판결 선고2017. 1. 20.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40,906원 및 그 중 29,567,756원에 대하여 2016. 5. 9.부터 이 사건 2016.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1) 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 사이에 2015. 1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40,9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30,040,90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3. 2. 1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5. 11. 12.경부터 그 이자를 연체하는 등으로 2015. 12. 13.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6. 5.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게 합계 29,567,756원(= 대출원금 29,000,000원 + 이자 567,756원)을 대위변제하는 한편, 그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370,66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02,490원이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C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C은 2015. 11. 18. 피고 D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53,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마쳐져 있던, ①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신만덕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 말소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수는 110,000,000원, 위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수는 20,114,491원이다.

3)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6. 8. 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66,000,000원이다.

2. 피고 A,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

1) 청구의 표시 제1의 가.항의 인정사실과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30,040,906원(= 대위변제금 29,567,756원 + 법적절차비용 370,660원 + 추가보증료 102,4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9,567,75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5. 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6.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8.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이 피고 D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체결 이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 35,885,509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66,000,000원 - 위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수 110,000,000원 - 위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수 20,114,491원) 보다 적은 금액인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액 30,040,9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D은 그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30,040,9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그 후 피고 A의 이자연체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 원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D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3) 피고 D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상의 다른 정상적인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E)의 중개 아래에 체결된 것인 점, 위 매매대금은 피고 D의 누나(F)의 부산 북구 G 토지 및 주택을 처분한 자금 등으로 지급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이 피고 A, C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채무현황이나 재산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으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등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위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 D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추경준

별지

1) 피고 A, 주식회사 B 2016.8.30., 피고 C 2016. 8. 29.